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5.(일) 12:00
(지 면) 2026. 11. 16.(월) 조간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무관용 원칙으로 연말까지 집중 정비

- 행정안전부-지방정부, 11월 23일(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
-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즉시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2025년 11월)과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 지원(2026년 1월)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정당현수막 정비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였고, 관련 민원은 49% 가량 크게 감소하였다.

※ 정비물량: '25년 73,897장→'26년 69,643장(△4,254장) / 민원: '25년 27,698건→'26년 14,040건(△13,658건)

그러나, 지난 9월 추석 이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고, 설치 개수·기간·방법 등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령 위반은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 변형 현수막에 대한 정비조치 강화

현수막 내용 판단에 앞서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15일)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에서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2025년 11월)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에서 철거 및 일시 보관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법령해석도 지원한다.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시·군·구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정부가 요청하면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방안을 안내한다. 해석결과는 전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중앙·지방·민간 상시 정비체계 강화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시·군·구는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기동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시·도는 시·군·구의 정비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철거 등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시·도 등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상습 설치지역 현장점검, 지방정부 단속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점검이 끝난 뒤 정비실적, 위반 및 처분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정비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현수막 정비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관할 경찰관서와도 협력해 현장 정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등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단속공무원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조속 개정 추진

현행 정당현수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법제사법위원회)과 정당법 개정(행정안전위원회)도 함께 추진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금지광고물 적용 범위를 현행 인종·성차별적 표현에서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확대하고, 정당법상 정당현수막의 내용 제한 규정을 연계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은 근거 없는 모욕·비방, 차별적 내용 및 폭력적 표현 등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16개 시·도 옥외광고 담당 국·과장 회의를 열어 이번 시행계획을 전달하였고, 11월 16일부터 정당 안내 및 대국민 홍보를 거쳐 11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국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주소정보혁신과	책임자	과 장 고종신 (044-205-3551)
		담당자	과학기술서기관 권순관 (044-205-35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정당현수막 정비 및 민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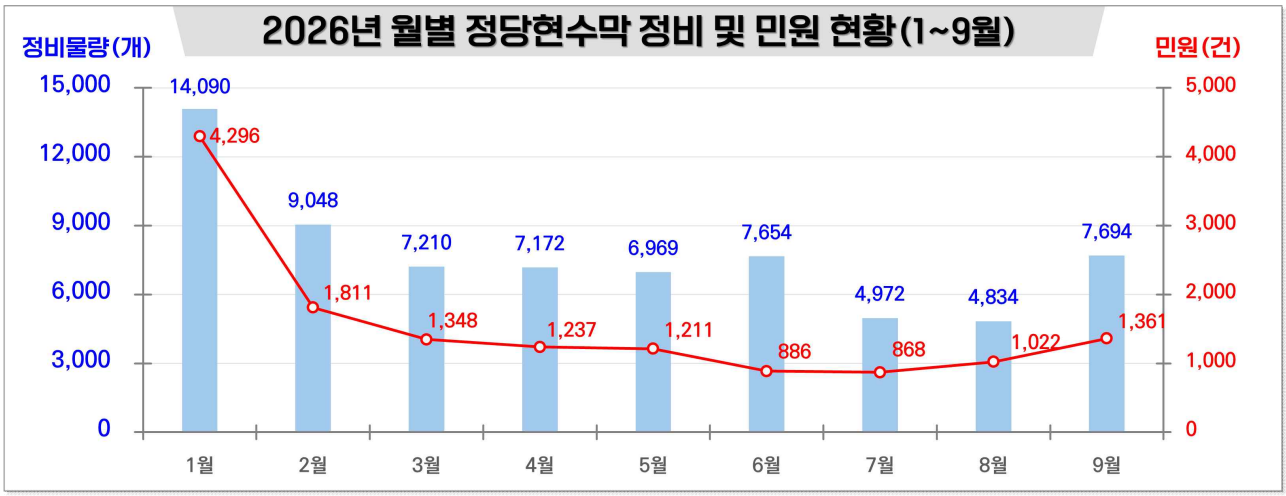
□ 연도별(2024년~2026년) 정당현수막 정비 및 민원현황

구분	정비 현황(개)	민원 현황(건)
2024년	55,571	13,729
2025년 (1월~9월)	102,300 (73,897)	35,239 (27,698)
2026년 1월~9월	69,643 **(전년 대비 △6%)**	14,040 **(전년 대비 △49%)**

※ 현행 정당현수막 제도가 시행된 2024년 1월부터 통계 관리

□ 2026년 월별(1월~9월) 정당현수막 정비 및 민원 현황

구분	정비 현황(개)	민원 현황(건)
계	**69,643**	**14,040**
1월	**14,090**	**4,296**
2월	9,048	1,811
3월	7,210	1,348
4월	7,172	1,237
5월	6,969	1,211
6월	7,654	886
7월	4,972	868
8월	4,834	1,022
9월	**7,694**	**1,361**



참고 2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형식적 요건) ※ '24.1.12. 시행

설치개수

-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

※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
(전국 3,524개 읍·면·동 중 192개 읍·면·동이 해당됨)

설치 금지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



설치 규격준수

- 글자 크기는 5cm 이상(세로)
- 정당명,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표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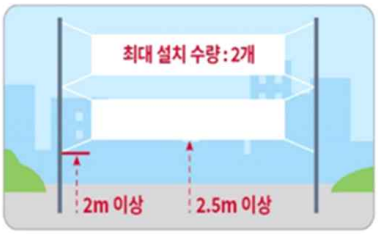
※ 표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시작일·종료일 병기

- 현수막 면적 10㎡ 이내



설치방법 제한

- 다른 현수막, 신호등·안전표지, CCTV를 가리는 방법 금지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금지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가로등·전봇대에 현수막 2개를 초과하여 설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참고 3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내용적 요건) ※ '25.11.18. 시행

□ 금지유형(6개 유형)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구체화

❶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 살인광, 절도, 강간, 폭력, 사기, 마약, 장기매매 등 관련 법령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표현
-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인 내용을 표현

❷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 특정 신체 부위 묘사 또는 노출, 성적인 행위를 연상하게 만드는 경우

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에게 성적 호기심 유발, 일탈 행위를 조장, 욕설·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 등

❹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과도한 이익 강조, 충동적 구매 유도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표현

❺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 특정국가 등 비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
- 여성차별, 남성경멸,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❻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 의료·보건 분야, 유해상품 분야 등 관련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 **(조치)** 설치자 등에게 제거 등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하면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

□ 제한유형

-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
-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조치)** 설치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불이행하면 게시행위를 중지시키고 정비한 광고물 등을 **일시 보관** 후 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